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6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최은석・김희정・고동진

박충권 • 이인선 • 김기현

김성원 · 권성동 · 박덕흠

정동만 · 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 제도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에 이르며, 이 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교원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조제2항의 경우에 사법경찰 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 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 <신 설></u>		②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교
		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게 송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u> <신 설></u>		제24조의2(재수사요청 등) ① 검
		사는 제24조제2항의 경우에 사
		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u>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u>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
		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
		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
		하여야 한다.